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04

발의연월일: 2024. 7. 18.

발 의 자: 박지혜・김기표・김 윤

권향엽 · 정진욱 · 박희승

황정아 • 박해철 • 민병덕

강준현 • 박정현 • 이재관

민형배 • 이건태 • 채현일

서영석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0.78명)보다 0.06명 감소하였는바, 이는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로 임신과 출산 환경과 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30일로, 난임치료휴가의 기간은 연간 3일 이내에서 연간 10일 이내로 각각 늘리고, 모두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기간 유급으로 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법률 제 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10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회"를 "3회"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본문 중 "3일"을 "10일"로, "최초 1일"을 "사용한 휴가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난임치료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	
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	
구하는 경우에 <u>10일</u> 의 휴가를	<u>30일</u>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u>1회</u> 에	④ <u>3</u> 회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	
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	
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에 연간 <u>3일</u> 이내의 휴가를 주	<u>10일</u>
어야 하며, 이 경우 <u>최초 1일</u> 은	<u>사용한</u>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u>휴가기간</u>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	
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	
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ユ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 설>

<u>②</u>·<u>③</u> (생 략)

② 난임치료휴가는 3회에 한정
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